|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가공무역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및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2004년 5월 25일 세관총서령 제111호 발표2014년 3월 13일 세관총서령 제218호에 의거하여 수정**제1조** 가공무역 보세 수입자재의 가공 과정에서 산출되는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및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내수 심의비준과 세관 감독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으로 약칭) 및 유관 법률, 행정 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열거하는 하기 용어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자투리는 가공무역기업이 가공 후 재수출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세관이 심사 확정한 단위 소모량 범위 내(이하 ‘단위 소모’)에서, 가공과정 중에 발생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수출 완제품의 가공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없는 합리적인 수량의 폐자재, 작은 부스러기, 스크랩을 의미한다.잉여자재는 가공무역기업이 가공 후 재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완제품 가공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공무역 수입자재를 의미한다.불량품은 가공무역기업이 가공 후 재수출 업무에 종사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수출계약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재수출할 수 없는 제품(완성품과 미완성품 포함)을 의미한다. 부산물은 가공무역기업이 가공 후 재수출 업무에 종사하고, 수출계약에서 정한 완성품(주요 제품)을 가공 생산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발생하며, 수출계약에서 재수출해야 할 의무를 약정하지 않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기타 제품을 의미한다.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은 가공무역기업이 가공 수출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나 기타 세관이 심사하여 인정한 정당한 이유로 인해 멸실, 결핍, 파손 등 상황이 초래되어 재수출을 할 수 없게 된 보세 수입자재와 제품을 의미한다. **제3조** 가공무역 보세 수입자재를 가공한 후에 발생하는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과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은 세관의 감독관리 화물에 해당한다. 세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기업, 단위, 개인도 임의로 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가공무역기업이 자투리의 내수 판매를 신청하는 경우, 상무 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면제한다. 기업은 직접 주관 세관에 신고하여 비준을 받고 내수와 관련된 유관 수속을 처리한다. (1)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내수판매 신청을 하는 자투리의 검사신청 상태에 따라 분류한 후, 적용 세율과 심사 확정된 자투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단, 세금지연이자의 징수는 면제한다.(2) 세관이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내수판매를 신청하는 자투리의 검사신청 상태에 따라 분류한 후, 자투리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환경보호총국 및 기타 수권부문의 수입허가증 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증 문건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5조** 가공무역기업이 잉여자재를 다른 가공무역계약으로 대체 사용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 경영기업, 동일 가공기업, 동종 수입자재와 동일 가공무역 방식으로 제한한다. 조건을 구비한 경우, 세관이 규정에 따라 단위 소모를 심사 확정한 후, 기업이 해당 계약의 핵소 및 잉여자재의 대체 사용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잉여자재를 대체 받은 계약이 이미 상무주관 부문의 심의비준을 받은 경우, 기존 심의비준 부문이 변경방식에 따라 유관 수속을 처리한다. 잉여자재를 대체 받는 양이 이미 비준된 계약상 수입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변경수속의 처리를 면제한다. 대체 받은 계약이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인 경우, 상무주관 부문은 현행 가공무역 심의비준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가공무역기업이 잉여자재의 대체 사용을 신청할 때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이 대체 사용 보세자료의 납부세액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위험담보금을 납부한 후에 세관이 처리를 허가한다. (1) 동일 경영기업이 다른 가공기업으로 잉여자재의 대체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2) 잉여자재의 대체 사용 금액이 해당 가공무역 계약에 따른 실제 수입자재 총량의 50% 이상에 달하는 경우(3) 잉여자재가 귀속된 가공무역계약이 2회 이상 연기수속을 처리한 경우잉여자재 대체 사용이 서로 다른 주관 세관과 관계된 경우, 쌍방 세관에서 유관 수속을 처리하고, 대체 받는 쪽의 세관에서 위험담보금을 수취한다.전항에서 열거한 위험담보금을 납부해야 하는 가공무역기업이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담보금 납부를 면제한다. (1) 가공무역 A류 관리를 적용하는 경우(2) 이미 대장을 설치하여 보증금을 실제로 납부한 계약으로 대장을 설치하여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보세자재 대체 사용으로 인한 납부세액보다 적지 않은 경우 (3) 원래 기업에 이전, 합병, 분리, 구조조정, 체제개혁, 지분권 변경 등 법률이 정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현행 기업이 원래 기업의 주요 권리 또는 채권채무관계를 승계한 경우, 잉여자재의 대체 사용은 동일 경영기업, 동일 가공기업, 동일 무역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6조** 가공무역기업이 잉여자재의 내수판매 또는 잉여자재로 생산한 완성품의 내수판매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잉여자재 금액이 해당 가공무역계약에 따른 실제 수입자재 총액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3% 이내(3% 포함)이고, 총가치가 인민폐 1만 위안(1만 위안 포함)이하인 경우, 상무주관 부문은 심의비준을 면제한다. 기업은 직접 주관 세관에서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주관 세관은 잉여자재에 대해 규정에 따라 세금과 세금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징수한 후에 핵소를 허가한다. 잉여자재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환경보호총국 및 그 수권부문의 수입허가증 문건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증 문건의 제출을 면제한다. (2) 잉여자재 금액이 해당 가공무역계약에 따른 실제 수입자재 총액에서 점유하는비율이 3% 이상이거나 총가치가 인민폐 1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상무주관부문이 유관 내수판매 심의비준 규정에 의거하여 심의비준을 한다. 세관은 상무주관부문의 비준문건에 의거하여 계약 중 내수 판매하는 모든 잉여자재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세금과 세금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잉여자재가 수입허가증 문건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유관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세관에 유관 수입허가증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3) 잉여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내수 판매해야 하는 경우, 세관은 그에 대응하는 수입자재의 가액에 기초하고 본 방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7조** 가공무역기업이 불량품을 내수 판매해야 하는 경우, 상응하는 수입자재 가액에 기초하고 본 방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8조** 가공무역기업의 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회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부산물을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수책 설치 또는 핵소 수속을 처리할 때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한다. 가공무역기업이 내수 판매해야 하는 부산물의 경우, 상무 주관부문이 부산물 실물 상태에 따라 내수판매 상품 명칭을 등재하고 가공무역 유관 내수판매 규정에 따라 심의비준 한다. 세관은 상무 주관부문의 비준문건에 의거하여 내수판매 유관 수속을 처리한다. 내수 판매해야 하는 부산물의 경우, 세관이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신청한 내수판매 부산물의 검역 상태에 따라 분류한 후 적용 세율과 심사 확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과 세금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신청한 내수판매 부산물의 검역 상태에 따라 분류한 후, 해당 부산물이 수입허가증 문건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세관에 유관 수입허가증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가공무역에 사용되는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포함)이 운수, 저장, 가공기간에 멸실, 결핍, 파손 등 되는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응당 적시에 주관 세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세관은 상황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1)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가공무역에 사용되는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경우, 세관의 조사 확인을 거쳐,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멸실 또는 멸실 되지 않았으나 완전히 사용가치를 상실하거나 재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세관이 면세 핵소를 허가한다. 수해를 입은 보세화물이 원래 사용가치를 상실하였으나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은 심사 확정한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가격과 수입자재에 대응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세금과 세금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징수한 후에 핵소한다.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에 대응하는 기존 수입자재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환경보호총국 및 그 수권 부문의 수입허가증 문건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증 문건의 제출을 면제한다. 기업은 규정된 핵소기간에 핵소를 신청할 때 다음에서 열거하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1. 상무주관부문의 참고의견2.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배상금 통지서 또는 검험검역부문이 발급한 유관 검험검역 증명문건3. 세관이 인가한 기타 유효한 증명문건(2) 불가항력 요인을 제외하고, 가공무역기업이 기타 세관이 심사하여 인가한 정당한 이유로 인해 가공무역 보세화물을 운송, 저장, 가공기간에 멸실, 결핍, 파손등 되는 경우, 세관은 상무 주관부문이 참고의견과 유관 주관 부문이 발급한 증명문건과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배상금통지서 또는 검험검역부문이 발급한 유관 검험검역 증명문건에 따라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과 세금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징수한 후에 핵소수속을 처리한다. 본 관에서 정한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에 대응하는 기존 수입자재가 수입허가증 문건 관리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관 수입허가증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본 방법 제4조, 제6조, 제7조가 수입허가증 문건의 제출을 면제하도록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제10조** 가공무역기업이 사정으로 인해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또는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SHIP-BACK 출국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SHIP-BACK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유관 SHIP-BACK 증명자료에 의거하여 핵소수속을 처리한다. **제11조** 가공무역기업이 사정으로 인해 내수 판매 또는 SHIP-BACK할 수 없는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또는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경우, 가공무역기업이 법정 자질을 구비한 단위에 위탁하여 소각처분을 진행한다. 세관은 유관 증빙, 처분 단위가 발급한 접수 증빙과 처분증명 등 자료에 의거하여 핵소수속을 처리한다. 세관은 인원을 파견하여 처분을 감독할 수 있고, 가공무역기업과 유관 처분단위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공무역기업이 처분을 통해 취득한 수입은 세관에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한다. 세관은 자투리 내수판매시 세금징수에 대한 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세금 징수 수속을 처리한다. **제12조** 수입관세 쿼터관리를 시행하는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및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경우, 다음에서 열거하는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내수판매를 신청한 검사상태 분류에 따라 자투리가 관세쿼터관리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관세쿼터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2)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내수판매를 신청한 검사상태 분류에 따라 부산물이 관세쿼터관리 상품에 해당하고,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효한 수입쿼터허가증 문건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은 관세쿼터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관 관세쿼터허가증 문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이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잉여자재, 불량품에 대응하는 수입자재가 관세쿼터관리를 실행하는 상품에 해당하고,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관 수입쿼터허가증 문건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은 관세쿼터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관 수입쿼터허가증 문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이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과 그에 대응하는 수입자재가 관세쿼터관리를 시행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관세쿼터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기타 세관이 심사하여 인가한 정당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과 그에 대응하는 수입자재가 관세쿼터관리를 시행하는 상품에 해당하고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관 수입쿼터허가증 문건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세관은 관세쿼터세율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징수한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관 수입허가증 문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반덤핑 세금, 반보조금 세금, 보장조치 관세 또는 보복성 관세(이하 “특별관세”로 통칭)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다음에서 열거한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내수판매를 신청한 검사상태 분류에 따라, 자투리가 특별관세를 추가 징수해야 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추가 징수가 필요한 특별관세의 징수를 면제한다.(2)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에 내수판매를 신청한 검사상태 분류에 따라 부산물이 특별관세를 추가 징수해야 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가 필요한 특별관세를 징수한다. (3) 잉여자재, 불량품에 대응하는 수입자재가 특별관세를 추가 징수해야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가 필요한 특별관세를 징수한다. (4) 불가항력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이 원래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그에 대응하는 수입자재가 특별관세를 추가 징수해야 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추가 징수가 필요한 특별관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기타 세관이 심사하여 허가한 정당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 그에 대응하는 수입자재가 특별관세를 추가 징수해야 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가 필요한 특별관세를 징수한다. **제14조** 가공무역기업이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및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내수판매를 위해 수출입통관 수속을 처리할 때, 다음에게 열거하는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1) 가공무역 잉여자재, 불량품 및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의 내수판매: 기업이 가공무역 기존 수입자재 품명을 기준으로 신고한다. (2) 가공무역 자투리와 부산물: 기업이 세관이 내수판매를 신청한 검사상태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제15조** 보세구, 수출가공구 가공무역기업이 가공무역 보세 수입자재를 가공하여 발생한 자투리, 잉여자재, 불량품, 부산물 등에 대한 내수판매 심의비준과 세관 감독관리는 보세구, 수출가공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16조** <세관법> 및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밀수를 구성하거나 또는 세관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이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 등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9월 13일에 발표한 <가공무역 자투리, 절약하여 남긴 자재, 불량품, 부산물 및 재해를 입은 보세화물에 관한 관리방법>(세관총서령 제87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加工贸易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和受灾保税货物的管理办法**2004年5月25日海关总署令第111号发布根据2014年3月13日海关总署令第218号修改　　**第一条** 为了规范对加工贸易保税进口料件在加工过程中产生的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和受灾保税货物的内销审批和海关监管，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以及有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　　边角料，是指加工贸易企业从事加工复出口业务，在海关核定的单位耗料量内（以下简称单耗）、加工过程中产生的、无法再用于加工该合同项下出口制成品的数量合理的废、碎料及下脚料。　　剩余料件，是指加工贸易企业在从事加工复出口业务过程中剩余的、可以继续用于加工制成品的加工贸易进口料件。　　残次品，是指加工贸易企业从事加工复出口业务，在生产过程中产生的有严重缺陷或者达不到出口合同标准，无法复出口的制品（包括完成品和未完成品）。　　副产品，是指加工贸易企业从事加工复出口业务，在加工生产出口合同规定的制成品（即主产品）过程中同时产生的，并且出口合同未规定应当复出口的一个或者一个以上的其他产品。　　受灾保税货物，是指加工贸易企业从事加工出口业务中，由于不可抗力原因或者其他经海关审核认可的正当理由造成灭失、短少、损毁等导致无法复出口的保税进口料件和制品。　**第三条** 加工贸易保税进口料件加工后产生的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及受灾保税货物属海关监管货物，未经海关许可，任何企业、单位、个人不得擅自销售或者移作他用。　**第四条** 加工贸易企业申请内销边角料的，商务主管部门免予审批，企业直接报主管海关核准并办理内销有关手续。　　（一） 海关按照加工贸易企业向海关申请内销边角料的报验状态归类后适用的税率和审定的边角料价格计征税款，免征缓税利息；　　（二） 海关按照加工贸易企业向海关申请内销边角料的报验状态归类后，属于发展改革委员会、商务部、环保总局及其授权部门进口许可证件管理范围的，免于提交许可证件。　　**第五条** 加工贸易企业申报将剩余料件结转到另一个加工贸易合同使用，限同一经营企业、同一加工企业、同样进口料件和同一加工贸易方式。凡具备条件的，海关按规定核定单耗后，企业可以办理该合同核销及其剩余料件结转手续。剩余料件转入合同已经商务主管部门审批的，由原审批部门按变更方式办理相关手续，如剩余料件的转入量不增加已批合同的进口总量，则免于办理变更手续；转入合同为新建合同的，由商务主管部门按现行加工贸易审批管理规定办理。　加工贸易企业申报剩余料件结转有下列情形之一的，企业缴纳不超过结转保税料件应缴纳税款金额的风险担保金后，海关予以办理：（一）同一经营企业申报将剩余料件结转到另一加工企业的； （二）剩余料件转出金额达到该加工贸易合同项下实际进口料件总额５０％及以上的； （三）剩余料件所属加工贸易合同办理两次及两次以上延期手续的； 剩余料件结转涉及不同主管海关的，在双方海关办理相关手续，并由转入地海关收取风险担保金。 前款所列须缴纳风险担保金的加工贸易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免于缴纳风险担保金： （一）适用加工贸易Ａ类管理的； （二）已实行台账实转的合同，台账实转金额不低于结转保税料件应缴税款金额的； 　 （三）原企业发生搬迁、合并、分立、重组、改制、股权变更等法律规定的情形，且现企业继承原企业主要权利义务或者债权债务关系的，剩余料件结转不受同一经营企业、同一加工企业、同一贸易方式限制。 　 **第六条** 加工贸易企业申请内销剩余料件或者内销用剩余料件生产的制成品，按照下列情况办理： 　 （一） 剩余料件金额占该加工贸易合同项下实际进口料件总额3%以内（含3%），并且总值在人民币1万元以下（含1万元）的，商务主管部门免予审批，企业直接报主管海关核准，由主管海关对剩余料件按照规定计征税款和税款缓税利息后予以核销。剩余料件属于发展改革委、商务部、环保总局及其授权部门进口许可证件管理范围的，免于提交许可证件。 　 （二） 剩余料件金额占该加工贸易合同项下实际进口料件总额3%以上或者总值在人民币1万元以上的，由商务主管部门按照有关内销审批规定审批，海关凭商务主管部门批件对合同内销的全部剩余料件按照规定计征税款和缓税利息。剩余料件属于进口许可证件管理的，企业还应当按照规定向海关提交有关进口许可证件。 　 （三）使用剩余料件生产的制成品需要内销的，海关根据其对应的进口料件价值，按照本条第（一）项或者第（二）项的规定办理。 　 **第七条** 加工贸易企业需要内销残次品的，根据其对应的进口料件价值，参照本办法第六条第（一）项或者第（二）项的规定办理。 　 **第八条** 加工贸易企业在加工生产过程中产生或者经回收能够提取的副产品，未复出口的，加工贸易企业在向海关办理手册设立或者核销手续时应当如实申报。 　 加工贸易企业需要内销的副产品，由商务主管部门按照副产品实物状态列明内销商品名称，并且按照加工贸易有关内销规定审批，海关凭商务主管部门批件办理内销有关手续。对于需要内销的副产品，海关按照加工贸易企业向海关申请内销副产品的报验状态归类后的适用税率和审定的价格，计征税款和缓税利息。 　 海关按照加工贸易企业向海关申请内销副产品的报验状态归类后，如果属于进口许可证件管理的，企业还应当按照规定向海关提交有关进口许可证件。 **第九条** 加工贸易受灾保税货物（包括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在运输、仓储、加工期间发生灭失、短少、损毁等情事的，加工贸易企业应当及时向主管海关报告，海关可以视情派员核查取证。 　 （一） 因不可抗力因素造成的加工贸易受灾保税货物，经海关核实，对受灾保税货物灭失或者虽未灭失，但是完全失去使用价值且无法再利用的，海关予以免税核销；对受灾保税货物虽失去原使用价值，但是可以再利用的，海关按照审定的受灾保税货物价格、其对应进口料件适用的税率计征税款和税款缓税利息后核销。受灾保税货物对应的原进口料件，属于发展改革委、商务部、环保总局及其授权部门进口许可证件管理范围的，免于提交许可证件。企业在规定的核销期内报核时，应当提供下列证明材料： 　 1. 商务主管部门的签注意见； 　 2. 保险公司出具的保险赔款通知书或者检验检疫部门出具的有关检验检疫证明文件； 　3. 海关认可的其他有效证明文件。 （二） 除不可抗力因素外，加工贸易企业因其他经海关审核认可的正当理由导致加工贸易保税货物在运输、仓储、加工期间发生灭失、短少、损毁等情事的，海关凭商务主管部门的签注意见、有关主管部门出具的证明文件和保险公司出具的保险赔款通知书或者检验检疫部门出具的有关检验检疫证明文件，按照规定予以计征税款和缓税利息后办理核销手续。本款所规定的受灾保税货物对应的原进口料件，如果属于进口许可证件管理范围的，企业应当按照规定向海关提交有关进口许可证件。本办法第四条、第六条、第七条规定免于提交进口许可证件的除外。 　 **第十条** 加工贸易企业因故申请将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或者受灾保税货物退运出境的，海关按照退运的有关规定办理，凭有关退运证明材料办理核销手续。 **第十一条** 加工贸易企业因故无法内销或者退运的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或者受灾保税货物，由加工贸易企业委托具有法定资质的单位进行销毁处置，海关凭相关单证、处置单位出具的接收单据和处置证明等资料办理核销手续。 　 海关可以派员监督处置，加工贸易企业及有关处置单位应当给予配合。加工贸易企业因处置获得的收入，应当向海关如实申报，海关比照边角料内销征税的管理规定办理征税手续。 　 **第十二条** 对实行进口关税配额管理的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和受灾保税货物，按照下列情况办理： 　 （一）边角料按照加工贸易企业向海关申请内销的报验状态归类属于实行关税配额管理商品的，海关按照关税配额税率计征税款； 　（二）副产品按照加工贸易企业向海关申请内销的报验状态归类属于实行关税配额管理的，企业如果能够按照规定向海关提交有关进口配额许可证件，海关按照关税配额税率计征税款；企业如果未能按照规定向海关提交有关进口配额许可证件，海关按照有关规定办理； 　 （三） 剩余料件、残次品对应进口料件属于实行关税配额管理的，企业如果能够按照规定向海关提交有关进口配额许可证件，海关按照关税配额税率计征税款；企业如果未能按照规定向海关提交有关进口配额许可证件，海关按照有关规定办理； 　 （四）因不可抗力因素造成的受灾保税货物，其对应进口料件属于实行关税配额管理商品的，海关按照关税配额税率计征税款；因其他经海关审核认可的正当理由造成的受灾保税货物，其对应进口料件属于实行关税配额管理的，企业如果能够按照规定向海关提交有关进口配额许可证件，海关按照关税配额税率计征税款；企业如果未能按照规定向海关提交有关进口配额许可证件，按照有关规定办理。 　 **第十三条** 属于加征反倾销税、反补贴税、保障措施关税或者报复性关税（以下统称特别关税）的，按照下列情况办理：　（一）边角料按照加工贸易企业向海关申请内销的报验状态归类属于加征特别关税的，海关免于征收需要加征的特别关税； 　　（二） 副产品按照加工贸易企业向海关申请内销的报验状态归类属于加征特别关税的，海关按照规定征收需加征的特别关税；　　（三） 剩余料件、残次品对应进口料件属于加征特别关税的，海关按照规定征收需加征的特别关税； 　　（四） 因不可抗力因素造成的受灾保税货物，如果失去原使用价值的，其对应进口料件属于加征特别关税的，海关免于征收需要加征的特别关税；因其他经海关审核认可的正当理由造成的受灾保税货物，其对应进口料件属于加征特别关税的，海关按照规定征收需加征的特别关税。 **第十四条** 加工贸易企业办理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和受灾保税货物内销的进出口通关手续时，应当按照下列情况办理： 　 　（一）加工贸易剩余料件、残次品以及受灾保税货物内销，企业按照其加工贸易的原进口料件品名进行申报； 　　（二）加工贸易边角料以及副产品，企业按照向海关申请内销的报验状态申报。 　 **第十五条** 保税区、出口加工区内加工贸易企业的加工贸易保税进口料件加工后产生的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等的内销审批和海关监管，按照保税区、出口加工区的规定办理。　　**第十六条** 违反《海关法》及本办法规定，构成走私或者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的，由海关依照《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等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十七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十八条** 本办法自2004 年7月1日起施行，2001年9月13日发布的《关于加工贸易边角料、节余料件、残次品、副产品和受灾保税货物的管理办法》（海关总署令第87号）同时废止。 |